

의안번호	2208234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5. 5. 9.
추계번호	25B095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억 9,800만원(연평균 1억 5,96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22조)	15,960	15,960	15,960	15,960	15,960	79,800	15,960

주: 1.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유사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지역 및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나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u>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음(제1항)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2. <u>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2	안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이하 “연륙도서지역”이라 함)을 포함한 전체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물류취약지역 개요

- 현행법¹⁾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²⁾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취약지역은 읍·면·동 기준 총 228개소(시·군·구 기준 56개소)이며, 이 중 연륙도서지역³⁾은 읍·면·동 기준 35개소임

[표 2] 물류취약지역 지정 현황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내 228개 읍·면·동)
부산(1)	강서구(<u>가덕도동</u>)
인천(4)	중구(<u>용유동</u>), 서구(<u>신현원창동</u>), 강화군(<u>교동면</u> , <u>삼산면</u> , 서도면), 옹진군(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u>영흥면</u>)
경기(3)	안산시(대부동), 화성시(우정읍, <u>서신면</u>), 가평군(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조종면)

1)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물류취약지역이 아닌 도서를 포함한 전체 연륙도서지역은 총 101개소임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내 228개 읍·면·동)
강원(13)	춘천시(동산면, 북산면), 원주시(귀래면), 삼척시(가곡면), 홍천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영귀미면), 횡성군(안흥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군(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산솔면), 평창군(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철원군(철원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화천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해안면, 국토정중앙면), 인제군(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북(1)	영동군(용화면)
충남(6)	보령시(웅천읍, <u>오천면</u> , 주산면, 미산면), 서산시(팔봉면, 지곡면), 당진시(석문면), 서천군(장항읍), 홍성군(서부면), 태안군(<u>안면읍</u> , <u>근흥면</u>)
전북(7)	군산시(옥도면), 완주군(상관면), 진안군(용담면, 성수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무풍면), 장수군(장수읍, 변암면), 고창군(심원면, 부안면), 부안군(계화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위도면)
전남(10)	목포시(유달동), 여수시(<u>돌산읍</u> , 율촌면, 화양면, <u>남면</u> , <u>화정면</u> , 삼산면, 월호동), 고흥군(<u>도양읍</u> , <u>금산면</u> , <u>도화면</u> , <u>포두면</u> , <u>봉래면</u> , 영남면, <u>과역면</u>), 보성군(별곡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망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u>군외면</u> , <u>신지면</u> , <u>고금면</u> ,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u>진도읍</u> , <u>고군면</u> , <u>의신면</u> ,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u>지도읍</u> , <u>압해읍</u> , <u>중도면</u> , <u>임자면</u> , <u>자은면</u> ,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u>안좌면</u> , <u>팔금면</u> , <u>압태면</u>)
경북(3)	영덕군(창수면), 봉화군(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울릉군(울릉읍, 서면, 북면)
경남(6)	통영시(<u>산양읍</u> , <u>용남면</u> , 도산면, 광도면, 옥지면, 한산면, 사랑면), 사천시(동서동), 양산시(원동면), 남해군(상주면, 미조면), 하동군(금남면, 진교면), 합천군(봉산면)
제주(2)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주: 밑줄 친 지역은 연륙도서지역(35개소)임

자료: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2호)

나.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 제22조제1항)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륙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본 추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전체 물류취약지역(읍·면·동 기준 228개소, 연륙도서지역 35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유사 실태조사의 읍·면·동 기준 단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는 2024년 실시한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해당 용역의 과업에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읍·면·동 기준 실태조사 비용은 70만원임

[표 3]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실태조사 소요 비용(읍·면·동 기준 단가)

조사 내용	읍·면·동 기준 소요 비용
물류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등	700,000원(인건비, 출장비 등)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억 9,800만원(연평균 1억 5,96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지역 (A, 개소)	228	228	228	228	228	—	—
실태조사 단가 (B, 만원)	70	70	70	70	70	—	—
실태조사비용 (C=A×B, 만원)	15,960	15,960	15,960	15,960	15,960	79,800	15,960

주: 1.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유사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실태조사 지역 및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유사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조사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